

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 창조,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모집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일반	10명	부산항만공사 사무·기술 업무지원
	고졸	5명	

□ 세부 배치인원

구 분	인원			근무 부서	
	일반	고졸	계		
사무	경영관리	2	1	3	경영본부(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재무회계부 등)
	항만운영	2	1	3	운영본부(물류정책실, 항만운영실 등), 재난안전실 등
	홍보, 마케팅	2	1	3	홍보부, 마케팅부, 해외사업실 등
	IT	1	1	2	정보융합부, PI추진T/F
기술	토목	2	-	2	건설계획실, 스마트항만실, 항만건설부, 재생개발실 등
	건축, 전기	1	1	2	항만시설부, 그린환경부 등
계		10	5	15	

* 근무부서는 임용 후 선호도 조사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변동 가능

나.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공, 학점, 어학, 성별 및 자격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1.07.0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1986년 07월 02일 이후 출생자 ○ 임용일로부터 3개월('21.07.01.~'21.09.30.) 근무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상 채용결격사유 및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p>※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p>
고 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1년 2월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21.05.10.)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p>※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p>

* 해당 자격 보유 기준일은 공고일('21.04.23.) 기준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2. 가점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전형별 가점	
		필기전형	면접전형
경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총점의 5%	총점의 5%
중증 장애인		총점의 7%	총점의 7%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총점의 5~10%	총점의 5~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총점의 3%	총점의 3%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총점의 3%	총점의 3%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총점의 3%	총점의 3%

* 상기 가점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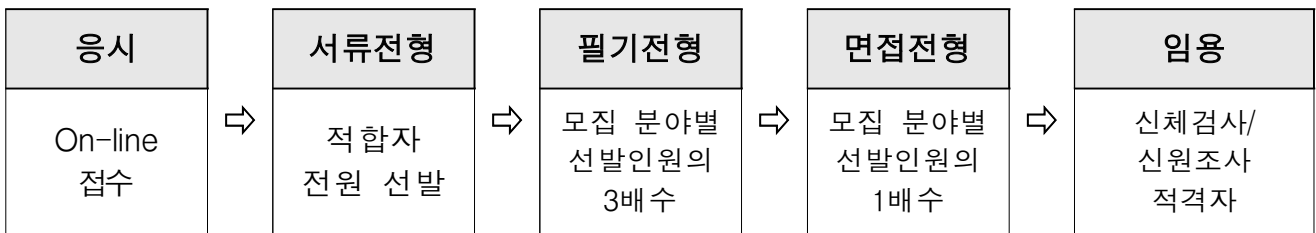
3. 근로조건

구분	주요 내용
고용형태	비정규직(인턴)
근무기간	3개월('21.07.01.~'21.09.30.)
근무지역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보수	194만원 상당 (4대보험가입, 중식비 포함)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인턴 기간 중 근무성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인턴으로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우대 (가점 부여)
- ** 근무기간 중 외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휴가 부여 가능,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기회 부여

4.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절차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 공고	'21.04.23.(금)~05.10.(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채용 홈페이지(busanpa1.incruit.com) ·알리오(www.alio.go.kr) ·잡알리오(job.alio.go.kr) 등

입사지원서 접수	'21.05.03.(월) 09:00 ~'21.05.10.(월) 18:00	·채용 홈페이지 접수
서류전형	'21.05.18.(화)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1.05.21.(금)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필기전형	'21.05.30.(일)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1.06.03.(목)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전형	'21.06.08.(화)	·역량면접(집단)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1.06.15.(화)	·예비합격자 포함
임용 예정일	'21.07.01.(목)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서류전형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회사명 오기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기재)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 사항(성명, 출생/출신지역,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블라인드 처리 위반(직접적 유추 가능) 사항 안내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p>[기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성을 포함한 이름), ‘홍기자’의 이름을 겹고 ~(성), 똑 부러지는 길동이~(이름)</p>
출생/ 출신지역	<p>[기준] 출생/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경상도 사나이 ~</p>
가족관계 · 친인척 언급	<p>[기준] 가족관계 · 친인척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물류사업을 하시는 삼촌 ~</p>
생년월일, 연령	<p>[기준]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p>
성별	<p>[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 군대 의무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 -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회의 임원으로서 ~</p>
출신학교	<p>[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p> <p>[예시] -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p>

* ‘경력 및 경험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대 상) 모집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전형기준)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시험과목)

시험과목 (반영비율)	주요 내용	문항 (시간)
인성검사 (적/부)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250문항 (30분)
직업기초 능력평가 (100%)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

□ 면접전형

- (응시대상)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
- (전형기준) 실무능력 및 인성 평가를 위한 면접 실시
- (면접방식 및 반영비율)

구 분		면접 방식	반영비율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	100%

-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및 위원들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구 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탈락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점수 6할 미만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과반수 위원이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최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탈락기준 :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및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시
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결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예비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1주일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되지 않음)

5. 제출서류

제출 시기	항목	대상자	비고
필기전형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 * 지원 자격 상 연령(만 34세 미만) 확인용으로, 생년월일 이외 자료는 음영 처리	모든 모집 분야 지원자	1부(사본)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졸 모집 분야 지원자에 한함	1부(원본)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1.04.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신분증은 제외)

6. 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나. 기타 결격사유

1.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1.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및 2021년도 상반기 정규직 채용(부산항만공사 공고 2021-054호)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우리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나.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다.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가.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시험 재실시
나.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다.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 재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 제22

조에 따릅니다.

6.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8.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 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1.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4.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 공사의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7.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1.05.10.(월), 18:00)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254, 3023)로 문의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전 고지사항)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부 이용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함